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

(제정) 2021.02.15. 규정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적용대상 임원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경영실적, 업무성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금”이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삭감)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을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6. “부가급여”란 보수 규정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말한다.
7.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의 봉급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일액”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책인상율”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연봉제 임원의 임금 인상율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연봉제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4조(연봉제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단의 임원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군수와 체결한다.

② 연봉계약은 [별표 1] 산출기준표에 따르며, 연봉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2부 작성·서명하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③ 임원의 초임 연봉액은 보수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연봉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월액으로 나누어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 규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기본연봉은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위해제 중의 지급률)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의 성과연봉은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제9조(과건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과건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과건되는 임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규정」(이하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 계속으로 보고 종래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이 사항을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1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정자(이사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공단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한다)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면 평정자는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봉 재심청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면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에는 연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군수를 말한다)에게 연봉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이사장이 연봉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군수를 말한다)은 연봉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② 연봉재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연봉의 재심은 평창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연봉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심 결과처리) ① 이사장(이사장의 연봉을 재심한 경우에는 군수를 말한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재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재심청구인은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규정 제8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봉 산출기준표

구 분	지급 항목		지급 시기	지급 기준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1. 기본급 2. 정근수당 3. 정근수당가산금 4. 관리업무수당 5. 명절휴가비	매월	해당 직급 및 호봉 기준
	기본가산급	정책인상 또는 삭감율(%) 반영		경영평가 결과
성과연봉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	경영평가 결과
부가 급여	1. 가족수당 2. 정액급식비 3. 직급보조비 4. 직책급업무추진비		매월	가족 수 및 해당 직급 등

[별지 제1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1. 계약사항

○ 연봉계약자

소 속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계약기간 : 20 ~ 20

2.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는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과 평창군수가 정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은 경영평가를 실시 한 경우에 지급한다.

○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12월 보수 지급일에 정산한다.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퇴직급여금 등은 연봉금액과 별도로 지급한다.

○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등은 「연봉제 규정」 및 「보수 규정」을 따른다.

3. 준수사항

○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연봉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평창군 지침에 따른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연봉 계약대상자 : (인)

연봉 계약체결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봉 재심 청구서

1. 청구인

- 소속 : 직위 : 성명 :

2. 연봉내역 : “별첨”

3. 불복사유 :

4. 청구요지 :

5. 참고사항

위와 같이 연봉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귀하